

교무위원회규정

3-1-3

규정번호 3-1-3
제정일자 1982.10.1
최근개정 2026.5.18
개정차수 21차 개정
관리부서 기획평가팀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·부총장·교목실장·기획실장·교무처장·산학협력처장·학생지원처장·사무처장·대학혁신본부장·평생교육본부장·국제교류본부장·학술정보원장·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.(개정 2015.12.03., 2018.08.27., 2018.12.10., 2025.3.31., 2026.5.18.)

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약간 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교 직제규정 제7조(직무대행·협조)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, 2026.5.18.)

제 4 조 (회의소집) 교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제 5 조 (개회 및 의결정족수) 교무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 (심의사항)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, 개·폐에 관한 사항
2. 학과설치 개폐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
3. 사무기구의 개폐·변경에 관한 사항
4.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
5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 7 조 (회의록) 교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 8 조 (업무관리 및 간사) 교무위원회의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업무부서 팀장을 간사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3-1-3 교무위원회규정

이 규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3> <생략>

<4>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①·②, 제3조①, 제6조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5> - <102> <생략>

부 칙(학칙) <2010.3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> <생략>

<3>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①항 중 “계열부장”을 각각 “학부장”으로 하고, 제8조의 “기획홍보과”를 각각 “기획홍보팀”으로, “기획홍보과장”을 각각 “기획홍보팀장”으로 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3-1-3 교무위원회규정

<4> - <49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12.6.4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<생략>

<2>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과반수 이상”을 각각 “과반수”로 한다.

<3> - <13> <생략>

부 칙(직제규정) <2013.7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<생략>

<2>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①항의 “산학협력처장, 학생처장, 교학부장”을 각각 “산학협력처장, 학생지원처장, 대외협력처장”으로 하고, 제8조의 “기획홍보팀 기획홍보팀장”을 “기획·예산팀 기획·예산팀장”으로 한다.

<3> - <30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부칙 개정)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3-1-3 교무위원회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·제2항, 제6조제6호)

부 칙(직제규정) <2025.3.3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

<1> 교무위원회규정(3-1-3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항의 “평생교육원장”을 “평생교육본부장”으로 한다.

<2> - <17> (생략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1항, 제3조제2항)